

의안번호	2212750
의 퇴 인	김도읍의원
회 답 일	2025. 10. 29.
추 계 번호	25C4891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의2(의료비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그 자녀에 대하여 진료·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이나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조의2(의료비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(안 제13조의2)

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와 그 자녀에 대하여 진료·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, 의료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의료비 지원의 기준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, 지원 범위나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참고로,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취지에는 동의하나, 개정안의 내용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서, 이는 보건의료정

책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의 의견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설명하고 있음

- 참고로, 현행법 제17조의6에서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에 따라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, 예산 범위 내에서 입소자 1인당 연 35만원 이내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실적은 다음과 같음

【표】 출산지원시설 입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예산 및 지원인원

(단위: 백만원, 명)

	2022	2023	2024	2025.8월
예산(국비)	91	90	88	83
지원인원	576	596	483	317

자료: 여성가족부
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